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김재진 의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 외 36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□ 본 조례안은 한강의 서울함공원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, 안보 테마공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- □ 또한 뚝섬한강공원의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의 상상마루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이용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서울함공원 등 평화 및 안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한 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(안제14조제2항제7호). 또한 별표 2 제5호 상상마루 기준 및이용료와 제8호 서울함공원 기준 및 이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.

- 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